

2021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021. 6. 24.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접수일정 및 접수방법 변경 가능

차 례

1. 공급일정	5
2. 신청관련 문의	6
3. 공급현황	6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18
5. 신청접수 안내	33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35
7. 심사서류 제출안내	35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41
9.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42
10.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43
11. 신청 시 유의사항	44
12. 단지 유의사항	45
13. 단지별 주소	47
14. 우편접수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49
〈별표1〉 행복주택 인터넷신청 요청서 (고령자)	51
〈별표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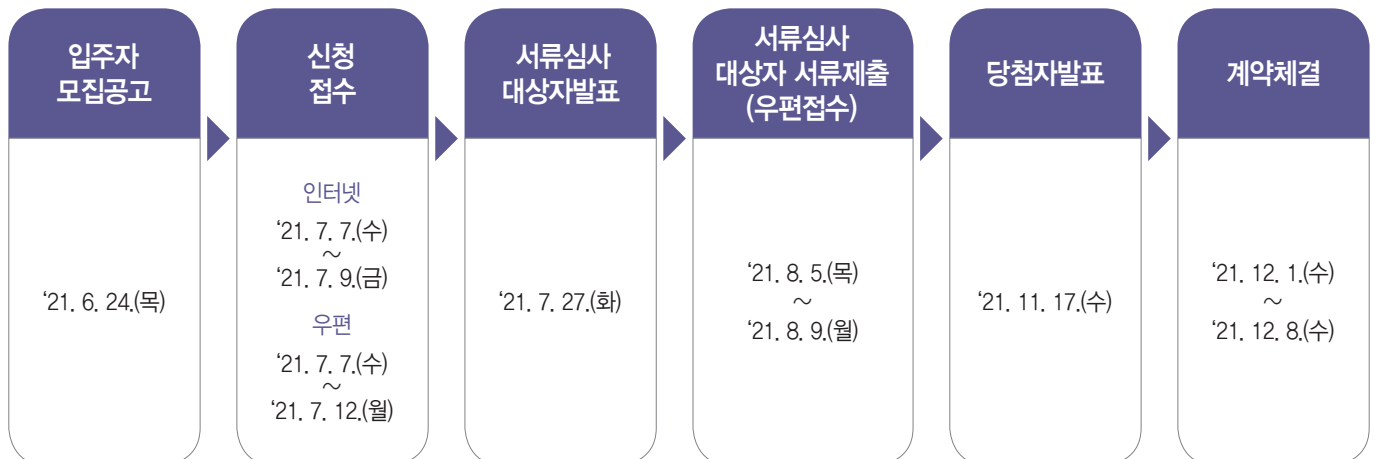
2021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021. 6. 24. 공고)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2021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행복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 신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우편청약 접수를 시행합니다.
 - 우편 청약은 신청자가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우리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본사 방문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공고문 상세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후에는 가점 산정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낮게 기입한 경우를 포함 일체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각 단지의 계약 및 입주 일정은 준공일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타 행복주택의 종전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져 탈락 처리됩니다.
 -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4-6 공통 신청자격-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2021-000474

1 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기간 : 2021. 7. 7.(수) 10:00 ~ 7. 9.(금) 17:00
- 우편접수 청약기간 : 2021. 7. 7.(수) ~ 7. 12.(월) 17:00 도착분까지
 -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접수 청약은 신청가능 일정이 상이하오니 [14. 우편접수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여건상 단지별로 계약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 2022년 1월~**

- 신규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단지별 준공일정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2022년 1월**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 공급 보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신청관련 문의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진행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신청자 스스로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 공급현황 : 총 1,278호

▶ **신규 공급 : 478호**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구분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소계			478	257	221											
디에이치 포레스트 (일원대우) [강남구 일원동]	59	신혼부부	9	5	4	59.92	20.70	56.99	137.61	235,200	47,040	188,160	823,000	최대	317,500	411,500
													최소	117,600	1,068,000	
	고령자	2	2	-	223,440	44,688	178,752	782,000	최대	301,640	391,000					
												최소	111,720	1,014,700		
르엘대치 (대치제2지구) [강남구 대치동]	35	고령자	14	7	7	35.97	12.23	35.93	84.12	143,640	28,728	114,912	502,000	최대	193,840	251,000
																최소
	43	신혼부부	8	4	4	43.99	15.13	43.95	103.07	182,400	36,480	145,920	639,000	최대	246,300	319,500
																최소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상환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구분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보라매자이 (동작트인시아) [동작구 신대방동]	36	신혼부부		14	7	7	36.60	10.32	20.70	67.62	133,600	26,720	106,880	400,000	최대	173,600	200,000	
		고령자		10	5	5					126,920	25,384	101,536		380,000	최소	66,800	539,100
	44	신혼부부		20	10	10	44.39	14.09	25.10	83.57	160,000	32,000	128,000	481,000		최대	208,100	240,500
		고령자		4	2	2					152,000	30,400	121,600		457,000	최소	80,000	647,600
	59	신혼부부		160	80	80	59.94	24.20	33.89	118.03	215,200	43,040	172,160	646,000		최대	279,800	323,000
		고령자		24	12	12					204,440	40,888	163,552		614,000	최소	107,600	870,100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거여2-1) [송파구 거여동]	39	신혼부부		10	5	5	39.90	21.06	29.16	90.12	120,000	24,000	96,000		400,000	최대	160,000
			고령자		6	3	3					114,000	22,800	91,200	380,000		최소	60,000
41		신혼부부		12	6	6	41.96	22.10	30.66	94.72	125,600	25,120	100,480	419,000		최대	167,500	209,500
		고령자		4	2	2					119,320	23,864	95,456		398,000	최소	62,800	549,800
51		신혼부부		11	6	5	51.97	27.47	37.98	117.42	155,200	31,040	124,160	517,000		최대	206,900	258,500
											77,600				678,600	최소	77,600	678,600
e편한세상 청계센터플로레 (용두5) [동대문구 용두동]		59	신혼부부		35	20	15	59.96	20.74	62.21	142.90	192,800	38,560	154,240		610,000	최대	253,800
			고령자		8	4	4					183,160	36,632	146,528	579,000		최소	96,400
	49	신혼부부		19	10	9	49.98	17.51	34.48	101.97	118,400	23,680	94,720	426,000		최대	161,000	213,000
		고령자		4	2	2					112,480	22,496	89,984		404,000	최소	59,200	549,300
태릉해링턴 플레이스 (태릉현대) [노원구 공릉동]	59	신혼부부		18	9	9	59.98	20.96	41.38	122.32	140,800	28,160	112,640	506,000		최대	191,400	253,000
		고령자		4	2	2					133,760	26,752	107,008		480,000	최소	70,400	652,600
	12	대학생		7	4	3	12.25	4.42	0.64	17.31	32,640	6,528	26,112	117,000		최대	44,340	58,500
											16,320				151,000	최소	16,320	151,000
YK서울대 (봉천동 912-16) [관악구 봉천동]	27	청년	소득 있는		2	2	-	27.90	10.04	1.44	39.38	77,760	15,552	62,208		279,000	최대	105,660
			소득 없는												38,880			
						73,440	14,688	58,752	264,000	최대	99,840	132,000						
						36,720				340,500	최소	36,720	340,5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구분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더헤르미온 (봉천동 1666-51) [관악구 봉천동]	10 (복층)	대학생		9	5	4	10.87	1.05	10.17	22.09	35,360	7,072	28,288	126,000	최대	47,960	63,000
		청년	소득 있는	10	5	5	10.87	1.05	10.17	22.09	37,440	7,488	29,952	133,000	최대	50,740	66,500
			소득 없는								35,360	7,072	28,288	126,000	최소	17,680	162,800
		최소		18,720	172,000												
신길역 봉주르 오피스텔 (영등포동 1가 31-3)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4 (복층)	대학생		4	2	2	14.31	6.56	2.09	22.96	36,720	7,344	29,376	114,000	최대	48,120	57,000
		청년	소득 있는	8	5	3					38,880	7,776	31,104	121,000	최대	50,980	60,500
			소득 없는								36,720	7,344	29,376	114,000	최소	19,440	161,500
		최소		18,360	152,200												
블리스 다임빌 (상봉동 104-33) [중랑구 상봉동]	23	대학생		3	3	-	23.04	5.28	2.93	31.25	56,440	11,288	45,152	194,000	최대	75,840	97,000
		최소		28,220	252,700												
	27	청년	소득 있는	2	2	-	27.20	6.24	3.46	36.90	71,280	14,256	57,024	243,000	최대	95,580	121,500
			소득 없는								67,320	13,464	53,856	229,000	최소	35,640	317,200
최대		90,220	114,500														
최소		33,660	299,100														
솔리스타 (목동 793-6) [양천구 목동]	29	청년	소득 있는	9	5	4	28.38	10.69	4.13	43.20	75,600	15,120	60,480	259,000	최대	101,500	129,500
			소득 없는								71,400	14,280	57,120	245,000	최소	37,800	337,700
		최대		95,900	122,500												
		최소		35,700	319,300												
써밋카운티 (답십리동 243-6) [동대문구 답십리동]	28	청년	소득 있는	2	2	-	28.45	7.20	7.23	42.88	72,000	14,400	57,600	228,000	최대	94,800	114,000
			소득 없는								68,000	13,600	54,400	215,000	최소	36,000	303,000
	최대		89,500	107,500													
	최소		34,000	285,800													
	34	청년	소득 있는	1	1	-	34.87	8.83	8.86	52.56	87,840	17,568	70,272	277,000	최대	115,540	138,500
			소득 없는								82,960	16,592	66,368	262,000	최소	43,920	368,500
최대		109,160	131,000														
최소		41,480	348,400														
아현시티 (아현동 327-10) [마포구 아현동]	25	청년	소득 있는	3	3	-	25.06	8.63	0.84	34.53	74,880	14,976	59,904	255,000	최대	100,380	127,500
			소득 없는								70,720	14,144	56,576	241,000	최소	37,440	333,000
	최대		94,820	120,500													
	최소		35,360	314,600													
	29	청년	소득 있는	1	1	-	29.34	9.34	0.98	39.66	84,240	16,848	67,392	289,000	최대	113,140	144,500
			소득 없는								79,560	15,912	63,648	273,000	최소	42,120	376,700
최대		106,860	136,500														
최소		39,780	355,800														
엘리시아차 (회양동 94-13) [광진구 회양동]	12 (일부 복층)	대학생		10	5	5	12.05	8.24	1.19	21.48	29,920	5,984	23,936	102,000	최대	40,120	51,000
		최소		14,960	133,1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구분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위너스힐 (화양동 111-89) [광진구 화양동]	23	대학생		7	5	2	23.67	2.52	15.74	41.93	57,120	11,424	45,696	195,000	최대	76,620	97,500
															최소	28,560	254,500
	25	청년	소득 있는	2	2	-	25.59	2.72	17.02	45.32	66,960	13,392	53,568	228,000	최대	89,760	114,000
			소득 없는												최소	33,480	297,700
	27	청년	소득 있는	2	2	-	27.20	2.89	18.09	48.18	71,280	14,256	57,024	243,000	최대	95,580	121,500
			소득 없는												최소	35,640	317,200
														최대	90,220	114,500	
														최소	33,660	299,100	

- 디에이치포레센트(일원대우), 르엘대치(대치제2지구), 태릉해링턴플레이스(태릉현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재건축 매입형 단지입니다.
-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거여2-1),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용두5구역)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재개발 매입형 단지입니다.
- 보라매자이(동작트인시아)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지역주택조합 매입형 단지입니다.
- YK서울대, 더헤르미온, 신길역봉주르오피스텔, 블리스다임빌, 솔리스타, 써밋카운티, 아현시티, 엘리시아1차, 위너스힐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다세대 매입형 단지입니다.
- 더헤르미온, 신길역봉주르오피스텔은 모든 세대가 복층형이며, 엘리시아1차는 10세대 중 2세대가 복층형(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동호추첨을 통해 배정)이므로 전자팜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급 : 800호**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구분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소계				800	445	355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관악구 봉천동]	50	신혼부부		1	1	-	50.24	21.60	40.89	112.73	130,400	26,080	104,320	446,000	최대	175,000	223,000
															최소	65,200	581,800
	59	신혼부부		1	1	-	59.96	22.02	36.86	118.84	155,200	31,040	124,160	531,000	최대	208,300	265,500
															최소	77,600	692,600
강동리엔파크 11 [강동구 상일동]	17	대학생		30	15	15	17.97	13.65	19.13	50.75	51,000	10,200	40,800	162,000	최대	67,200	81,000
															최소	25,500	215,100
	청년	소득 있는	35	20	15	29.99	22.29	31.93	84.21	83,640	16,728	66,912	265,000	최대	71,100	85,500	
		소득 없는												최소	27,000	227,200	
	29S	청년	소득 있는	11	6	5	29.99	22.29	31.93	84.21	88,560	17,712	70,848	281,000	최대	116,660	140,500
			소득 없는												최소	44,280	373,200
	고령자		20	10	10					93,480	18,696	74,784	296,000	최대	110,140	132,500	
														최소	41,820	352,100	
														최대	123,080	148,000	
														최소	46,740	393,3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구분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강동리엔파크 14 [강동구 상일동]	17	대학생		1	1	-	17.81	8.82	15.34	41.97	51,000	10,200	40,800	162,000	최대	67,200	81,000
	29S	청년	소득 있는	11	6	5	29.84	13.96	25.71	69.51	88,560	17,712	70,848	281,000	최대	116,660	140,500
			소득 없는								83,640	16,728	66,912	265,000	최소	44,280	373,200
		고령자		20	10	10					93,480	18,696	74,784	296,000	최대	123,080	148,000
											최소	46,740	393,300				
강일리버파크 11 [강동구 강일동]	29	청년	소득 있는	50	25	25	29.96	17.48	25.15	72.59	58,320	11,664	46,656	194,000	최대	77,720	97,000
			소득 없는								55,080	11,016	44,064	184,000	최소	29,160	254,700
		고령자		9	5	4					61,560	12,312	49,248	205,000	최대	73,480	92,000
			최소				27,540	241,300									
	29S	고령자		7	4	3	29.97	17.42	25.16	72.55	61,560	12,312	49,248	205,000	최대	82,060	102,500
		최소	30,780	269,100													
개포래미안 포레스트 [강남구 개포동]	49	신혼부부		5	3	2	49.92	24.39	48.85	123.16	198,400	39,680	158,720	694,000	최대	267,800	347,000
													최소	99,200	900,600		
거여 리본타운 [송파구 거여동]	29	청년	소득 있는	6	3	3	29.58	15.10	31.01	75.69	48,240	9,648	38,592	140,000	최대	62,240	70,000
			소득 없는								45,560	9,112	36,448	133,000	최소	24,120	190,200
		주거급여수급자		2	2	-					40,200	8,040	32,160	117,000	최대	58,860	66,500
			최소				22,780	180,400									
29S	고령자		1	1	-	29.58	15.10	31.01	75.69	50,920	10,184	40,736	148,000	최대	65,720	74,000	
													최소	25,460	201,000		
고덕 그라스움 [강동구 고덕동]	59	신혼부부		1	1	-	59.79	22.76	50.05	132.60	176,800	35,360	141,440	590,000	최대	235,800	295,000
													최소	88,400	774,100		
고덕 센트럴푸르지오 [강동구 고덕동]	40	신혼부부		10	5	5	40.92	21.87	33.75	96.54	123,200	24,640	98,560	390,000	최대	162,200	195,000
		고령자									2	1	1	117,040	23,408	93,632	371,000
														최대	154,140	185,500	
													최소	58,520	492,900		
디에이치아너힐즈 [강남구 개포동]	49	신혼부부		2	2	-	49.40	18.14	41.92	109.46	208,000	41,600	166,400	692,000	최대	277,200	346,000
													최소	104,000	908,600		
디에이치아이 개포 [강남구 개포동]	44	신혼부부		5	3	2	44.84	23.57	35.33	103.74	188,800	37,760	151,040	628,000	최대	251,600	314,000
		고령자									2	2	-	179,360	35,872	143,488	597,000
														최대	239,060	298,500	
													최소	89,680	783,800		
래미안로이파크 [동작구 사당동]	59	신혼부부		3	3	-	59.98	20.39	52.75	133.12	214,400	42,880	171,520	643,000	최대	278,700	321,500
													최소	107,200	866,3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구분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래미안명일역 솔베뉴 [강동구 명일동]	49	신혼부부	1	1	-	49.62	20.74	36.85	107.21	149,600	29,920	119,680	498,000	최대	199,400	249,000	
	59	신혼부부	1	1	-	59.11	24.59	43.90	127.60	175,200	35,040	140,160	584,000	최소	74,800	653,800	
래미안 신반포리오센트 [서초구 잠원동]	59	신혼부부	2	2	-	59.92	25.99	51.53	137.44	264,800	52,960	211,840	839,000	최대	348,700	419,500	
														최소	132,400	1,114,800	
래미안 개포루체하임 [강남구 일원동]	49	신혼부부	2	2	-	49.99	25.37	40.40	115.76	208,800	41,760	167,040	696,000	최대	278,400	348,000	
	59	신혼부부	1	1	-	59.98	26.67	48.47	135.12	247,200	49,440	197,760	825,000	최소	104,400	913,500	
래미안 블레스티지 [강남구 개포동]	49	신혼부부	6	3	3	49.91	17.86	44.43	112.20	207,200	41,440	165,760	691,000	최대	276,300	345,500	
		고령자	2	2	-									196,840	39,368	157,472	657,000
	59	신혼부부	3	3	-	59.89	20.90	53.32	134.11	242,400	48,480	193,920	809,000	최대	323,300	404,500	
														최소	121,200	1,061,500	
마포웨스트리버 태영데시앙 [마포구 창전동]	59	신혼부부	1	1	-	59.80	19.94	37.43	117.17	205,600	41,120	164,480	651,000	최대	270,700	325,500	
														최소	102,800	865,100	
방배아트자이 [서초구 방배동]	59	신혼부부	1	1	-	59.98	20.77	66.96	147.71	251,200	50,240	200,960	794,000	최대	330,600	397,000	
서초선포레 [서초구 신원동]	21	청년	소득 있는	2	2	-	21.58	12.84	21.27	55.69	57,240	11,448	45,792	181,000	최대	75,340	90,500
			소득 없는												최소	28,620	240,600
	29	청년	소득 있는	3	3	-	29.26	17.01	28.84	75.11	81,720	16,344	65,376	258,000	최대	107,520	129,000
			소득 없는												최소	40,860	343,100
		고령자	2	2	-	29.26	17.01	28.84	75.11	86,260	17,252	69,008	273,000	최대	113,560	136,500	
														최소	43,130	362,800	
송파파크데일3 [송파구 마천동]	21	청년	소득 있는	17	9	8	21.92	12.07	14.55	48.54	49,320	9,864	39,456	144,000	최대	63,720	72,000
			소득 없는												최소	24,660	195,300
	주거급여수급자	3	3	-	49.21	23.31	36.40	108.92	195,200	39,040	156,160	569,000	최대	208,800	236,000		
													최소	80,800	640,300		
송파헬리오시티 [송파구 가락동]	39	신혼부부	50	25	25	39.10	22.27	28.92	90.29	161,600	32,320	129,280	472,000	최대	208,800	236,000	
														최소	80,800	640,300	
	고령자	9	5	4	49.21	23.31	36.40	108.92	195,200	39,040	156,160	569,000	최대	198,320	224,000		
													최소	76,760	607,900		
49	신혼부부	8	4	4	49.21	23.31	36.40	108.92	195,200	39,040	156,160	569,000	최대	252,100	284,500		
														최소	97,600	772,3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구분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수락리버타운* [노원구 상계동]	21	대학생		5	3	2	21.92	13.35	3.02	38.29	33,660	6,732	26,928	124,000	최대	46,060	62,000
				최소	16,830	159,000											
		청년	소득 있는	6	3	3					35,640	7,128	28,512	131,000	최대	48,740	65,500
	최소						17,820	168,100									
	청년	소득 없는	6	3	3	33,660	6,732	26,928	124,000	최대	46,060	62,000					
최소						16,830	159,000										
21S	고령자	1	1	-	21.92	13.35	3.02	38.29	37,620	7,524	30,096	138,000	최대	51,420	69,000		
최소	18,810	177,100															
숲에리움 [구로구 오류동]	16	대학생		15	8	7	16.99	12.59	7.42	37.00	53,040	10,608	42,432	182,000	최대	71,240	91,000
				최소	26,520	237,200											
	16	주거급여수급자		5	3	2	16.99	12.59	7.42	37.00	46,800	9,360	37,440	160,000	최대	62,800	80,000
											최소	23,400	208,700				
	17	고령자	4	2	2	17.08	12.63	7.47	37.18	60,040	12,008	48,032	205,000	최대	80,540	102,500	
	최소	30,020	267,500														
	22	청년	소득 있는	3	3	-	22.38	13.95	12.87	49.20	72,000	14,400	57,600	246,000	최대	96,600	123,000
											최소	36,000	321,000				
청년	소득 없는	3	3	-	22.38	13.95	12.87	49.20	49.20	68,000	13,600	54,400	233,000	최대	91,300	116,500	
										최소	34,000	303,800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중랑구 신내동]	29	청년	소득 있는	14	7	7	29.71	25.30	6.53	61.54	56,880	11,376	45,504	204,000	최대	77,280	102,000
											최소	28,440	263,200				
	청년	소득 없는	14	7	7	29.71	25.30	6.53	61.54	61.54	53,720	10,744	42,976	192,000	최대	72,920	96,000
											최소	26,860	247,900				
29S	고령자	2	2	-	29.71	25.30	6.53	61.54	60,040	12,008	48,032	215,000	최대	81,540	107,500		
최소	30,020	277,500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중랑구 신내동]	21	청년	소득 있는	20	10	10	21.96	11.82	13.85	47.63	37,440	7,488	29,952	134,000	최대	50,840	67,000
											최소	18,720	173,000				
	청년	소득 없는	20	10	10	21.96	11.82	13.85	47.63	47.63	35,360	7,072	28,288	126,000	최대	47,960	63,000
											최소	17,680	162,800				
	21S	고령자	5	3	2	21.96	11.82	13.85	47.63	39,520	7,904	31,616	141,000	최대	53,620	70,500	
	최소	19,760	182,100														
	31	청년	소득 있는	10	5	5	31.85	16.45	20.10	68.40	54,000	10,800	43,200	194,000	최대	73,400	97,000
최소											27,000	250,200					
청년	소득 없는	10	5	5	31.85	16.45	20.10	68.40	68.40	51,000	10,200	40,800	183,000	최대	69,300	91,500	
										최소	25,500	236,100					
31S	고령자	1	1	-	31.85	16.45	20.10	68.40	57,000	11,400	45,600	204,000	최대	77,400	102,000		
최소	28,500	263,300															
신마곡벽산블루밍 [강서구 방화동]	49	신혼부부		3	3	-	49.65	18.70	35.54	103.89	140,000	28,000	112,000	444,000	최대	184,400	222,000
최소	70,000	589,800															
신정 파크사인 [양천구 신정동]	26	청년	소득 있는	5	3	2	26.50	12.88	20.69	60.07	78,480	15,696	62,784	268,000	최대	105,280	134,000
											최소	39,240	349,700				
	청년	소득 없는	5	3	2	26.50	12.88	20.69	60.07	60.07	74,120	14,824	59,296	253,000	최대	99,420	126,500
											최소	37,060	330,200				
26S	고령자	4	2	2	26.50	12.88	20.69	60.07	82,840	16,568	66,272	283,000	최대	111,140	141,500		
최소	41,420	369,200															
신촌숲아이파크 [마포구 신수동]	59	신혼부부		2	2	-	59.75	25.88	39.99	125.62	205,600	41,120	164,480	651,000	최대	270,700	325,500
최소	102,800	865,100															

* 입주자격 완화단지 (공고문 29쪽 참조)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하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구분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 [송파구 풍납동]	59	신혼부부	2	2	-	59.97	23.66	55.10	138.73	211,200	42,240	168,960	704,000	최대	281,600	352,000	
														최소	105,600	924,000	
정릉 하늘마루 [성북구 정릉동]	19	대학생	5	3	2	19.70	11.33	14.68	45.71	57,800	11,560	46,240	183,000	최대	76,100	91,500	
																	최소
	주거급여수급자	4	2	2						51,000	10,200	40,800	161,000	최대	67,100	80,500	
														최소	25,500	214,100	
	22	청년	소득 있는	3	3	-	22.26	12.69	16.59	51.54	67,680	13,536	54,144	215,000	최대	89,180	107,500
	소득 없는	63,920	12,784	51,136	203,000	최대	84,220	101,500									
													최소	31,960	269,500		
	26	청년	소득 있는	1	1	-	26.15	14.83	19.49	60.47	79,200	15,840	63,360	251,000	최대	104,300	125,500
	소득 없는	74,800	14,960	59,840	237,000	최대	98,500	118,500									
													최소	37,400	314,900		
26S	고령자	10	5	5	26.39	14.82	19.68	60.89	83,600	16,720	66,880	264,000	최대	110,000	132,000		
													최소	41,800	351,000		
36	청년	소득 있는	6	3	3	36.33	19.95	27.06	83.34	107,280	21,456	85,824	340,000	최대	141,280	170,000	
소득 없는	101,320	20,264	81,056	321,000	최대	133,420	160,500										
												최소	50,660	426,500			
천왕연지마을 1 [구로구 오류동]	20	대학생	7	4	3	20.61	11.99	13.92	46.52	31,280	6,256	25,024	104,000	최대	41,680	52,000	
																	최소
	주거급여수급자	4	2	2						27,600	5,520	22,080	92,000	최대	36,800	46,000	
														최소	13,800	120,700	
	32	청년	소득 있는	10	5	5	32.31	18.54	21.80	72.65	50,400	10,080	40,320	168,000	최대	67,200	84,000
소득 없는	47,600	9,520	38,080	158,000	최대	63,400	79,000										
												최소	23,800	207,500			
주거급여수급자	6	3	3						42,000	8,400	33,600	140,000	최대	56,000	70,000		
													최소	21,000	183,700		
32S	고령자	1	1	-	32.64	18.70	22.03	73.37	53,200	10,640	42,560	177,000	최대	70,900	88,500		
													최소	26,600	232,400		
천왕연지마을 2* [구로구 천왕동]	19	대학생	12	6	6	19.83	10.63	19.21	49.67	32,300	6,460	25,840	107,000	최대	43,000	53,500	
														최소	16,150	140,600	
	22	청년	소득 있는	2	2	-	22.23	12.42	21.53	56.18	38,160	7,632	30,528	127,000	최대	50,860	63,500
	소득 없는	36,040	7,208	28,832	120,000	최대	48,040	60,000									
													최소	18,020	157,500		
	22S	고령자	1	1	-	22.23	12.42	21.53	56.18	40,280	8,056	32,224	135,000	최대	53,780	67,500	
														최소	20,140	176,900	
31	청년	소득 있는	7	4	3	31.06	15.85	30.11	77.02	52,920	10,584	42,336	176,000	최대	70,520	88,000	
소득 없는	49,980	9,996	39,984	167,000	최대	66,680	83,500										
												최소	24,990	219,000			

* 입주자격 완화단지 (공고문 29쪽 참조)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구분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천양연지마을 2* [구로구 천왕동]	31S	고령자	1	1	-	31.06	15.85	30.11	77.02	55,860	11,172	44,688	186,000	최대	74,460	93,000	
	40	신혼부부	13	7	6	40.10	20.09	38.86	99.05	74,800	14,960	59,840	250,000	최소	27,930	244,100	
천왕지구 8단지* [구로구 천왕동]	29	대학생	12	6	6	29.38	18.51	15.36	63.25	43,180	8,636	34,544	144,000	최대	57,580	72,000	
		청년	소득 있는	12	6					6	45,720	9,144	36,576	153,000	최대	61,020	76,500
			소득 없는								43,180	8,636	34,544	144,000	최소	22,860	200,600
		주거급여수급자	3	3	-					38,100	7,620	30,480	127,000	최대	57,580	72,000	
	29S	고령자	4	2	2	29.38	18.51	15.36	63.25	48,260	9,652	38,608	161,000	최소	21,590	188,900	
		청년	소득 있는	20	10	10	56,880	11,376	45,504	189,000	최대	64,360	80,500				
	소득 없는		53,720				10,744	42,976	179,000	최소	24,130	211,200					
	36	신혼부부	16	8	8	36.87	23.23	19.28	79.38	63,200	12,640	50,560	210,000	최대	75,780	94,500	
										최소	31,600	275,800					
	45	신혼부부	4	2	2	45.77	28.84	23.93	98.54	78,800	15,760	63,040	262,000	최대	84,200	105,000	
	초행지붕-미아-3 (삼양동 791-1960) [강북구 미아동]	47	신혼부부	1	1	-	47.47	47.29	0.00	94.76	100,800	20,160	80,640	329,000	최소	39,400	344,000
		52	신혼부부	1	1	-	52.02	51.83	0.00	103.85	108,000	21,600	86,400	351,000	최대	105,000	131,000
항동 하버라인 9·10·11단지 [구로구 항동]	29	청년	소득 있는	51	26	25	29.69	17.35	27.23	74.27	50,040	10,008	40,032	167,000	최대	133,700	164,500
			소득 없는								47,260	9,452	37,808	158,000	최소	50,400	434,000
		고령자	최대	63,060	79,000												
			최소	23,630	207,200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70,420	88,000													
		최소	26,410	231,000													
	39	청년	소득 있는	36	18	18	39.69	22.59	36.38	98.66	66,240	13,248	52,992	221,000	최대	88,340	110,500
			소득 없는								62,560	12,512	50,048	209,000	최소	33,120	290,000
		신혼부부	최대	83,460	104,500												
			최소	31,280	274,100												
힐스테이트 청계 (대농신안) [동대문구 답십리동]	40	신혼부부	10	5	5	40.60	22.08	35.12	97.80	109,600	21,920	87,680	374,000	최대	98,200	123,000	
		고령자	4	2	2					104,120	20,824	83,296	355,000	최소	36,800	322,600	
최대	147,000	187,000															
	최소	54,800	488,100														
최대	139,620	177,500															
	최소	52,060	463,400														

* 입주자격 완화단지 (공고문 29쪽 참조)

- 강동리엔파크 11, 강동리엔파크 14, 강일리버파크 11, 거여 리본타운, 초행지봉-미아-3, 서초선포레, 송파파크데일 3, 수락리버타운, 숲에리움,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신정 파크사인, 정릉 하늘마루, 천왕연지마을 1, 천왕연지마을 2, 천왕지구 8단지, 향동 하버라인 9 · 10 · 11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이며, 그 외 단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재건축 매입형 단지입니다.
- ※ 수락리버타운,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천왕연지마을 2, 천왕지구 8단지는 **입주자격(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며 세부사항은 공고문 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중 21S, 26S, 29S, 31S, 32S은 주거약자용 주택(S형)이며,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동일단지, 동일면적간에는 S형 구분없이 공급대상을 바꾸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재공급단지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누수, 결로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당첨 대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 평형이라도 각 타입별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구분없이 신청 접수합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대표타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타입별 평면도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세대주택의 유사 평형은 하나의 계약면적으로 공급됩니다. 이후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서로 다른 평형을 배정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단, 서류심사 결과 허위기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격처리 되어 해당 공고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신청평형별로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공사 방침에 따라 미달된 계층의 모집호수를 초과된 계층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신청유형의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각 평형별로 타입 구분 없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합니다.
- 행복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지역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공급단지별 · 해당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단지별 주소] 참조)
-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난방방식
디에이치포레센트 (일원대우)	서울시	현대건설	철근콘크리트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상지이앤씨(주)	지역난방
르엘대치 (대치제2지구)	서울시	롯데건설(주)	철근콘크리트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지어이앤씨	개별난방
보라매자이 (동작제인시아)	서울시	GS건설	철근콘크리트	주택도시 보증공사	신우엔지니어링 태양이앤씨 세정이에프씨	개별난방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 (거여2-1)	서울시	롯데건설(주)	철근콘크리트벽식	주택도시 보증공사	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주)동우이앤씨 상지이앤씨(주)	개별난방
이편한세상 청계센터럴포레 (용두5구역)	서울시	대림산업(주)	철근콘크리트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이비엔지니어링 유앤이엔에프주식회사	개별난방
태릉해링턴 플레이스 (태릉현대)	서울시	효성중공업(주)	철근콘크리트벽식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이앤씨주식회사 (주)케이아이씨	개별난방
YK서울대 (봉천동 912-16)	서울시	(주)그린플러스 종합건설	철근콘크리트	-	종합건축사사무소선	개별난방
더헤르미온 (봉천동 1666-51)	서울시	디에이치디 건설	철근콘크리트	-	엠플러스이앤씨 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신길역봉주르 오피스텔 (영등포동1가 31- 3)	서울시	성일개발(주)	철근콘크리트	-	용우옥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블리스다임빌 (상봉동 104-33)	서울시	세주토건(주)	철근콘크리트	-	신동인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솔리스타 (목동 793-6)	서울시	투탑건설	철근콘크리트벽식	-	우리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쌔릿카운티 (답십리동 243-6)	서울시	주식회사 유니온 종합건설	철근콘크리트	-	주식회사 기하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아현시티 (아현동 327-10)	서울시	강산종합건설(주)	철근콘크리트	-	(주)라스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엘리시아1차 (화양동 94-13)	서울시	(주)에이츠에스건설	철근콘크리트	-	(주)울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위너스힐 (화양동 111-89)	서울시	(주)이조건설	철근콘크리트	-	CMJ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서울시	대림산업(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강동리엔파크 11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신동아건설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강동리엔파크 14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대우조선 해양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건원엔지니어링	지역난방
강일리버파크 11	서울주택 도시공사	대흥토건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무량판구조 (중공슬라브)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개포래미안 포레스트	서울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정림건축사사무소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거여리본타운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원건설 외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중공슬라브)	-	(주)유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난방방식
고덕그라시움	서울시	(주)대우건설, 현대건설(주), SK건설(주)	무량판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성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유원건축사사무소 (주)한국전설엔지니어링	지역난방
고덕센터럴 푸르지오	서울시	(주)대우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한국환경 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디에이치아너힐즈	서울시	현대건설(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동일건축 (주)유원건축사사무소 한방유비스	개별난방
디에이치자이개포	서울시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철근콘크리트구조	-	정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일MEC 토펙 엔지니어링	지역난방
래미안로이파크	서울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무영씨엠 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래미안명일역 솔베뉴	서울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PC복합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기람건축 (주)경민엔지니어링 (주)건창기술단	개별난방
래미안 신반포리오센트	서울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 및 PC복합구조	-	(주)성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래미안 개포루체하임	서울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지하 RC+PC 복합화)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래미안블레스티지	서울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지하 RC+PC 복합화)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기람건축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마포웨스트리버 태영대시앙	서울시	(주)태영건설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방배아트자이	서울시	GS건설(주)	콘크리트벽식구조	건설공제조합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개별난방
서초선포레	서울주택 도시공사	위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개별난방
송파파크데일 3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원건설 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송파헬리오시티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신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수락리버타운	서울주택 도시공사	한일건설(주) 보령종합건설(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감리)	개별난방
숲에리움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보미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목양건축소사무소 (주)동해종합기술공사	개별난방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주택 도시공사	한일건설 외	철근콘크리트구조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감리)	개별난방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주택 도시공사	한일건설(주) 보령종합건설(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감리)	개별난방
신마곡벽산블루밍	서울시	(주)벽산ENF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플랫슬라브	-	(주)TOP C&D 도시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신정파크샤인	서울주택 도시공사	샘코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신촌숲아이파크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주)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	서울시	HDC 현대산업개발(주)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주)아이비엔지니어링 (주)한국엔지니어링	지역난방
정릉하늘마루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 대흥토건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난방방식
천왕연지마을 1	서울주택 도시공사	대들보건설 외 1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중공슬라브)	-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천왕연지마을 2	서울주택 도시공사	대들보건설 외 1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천왕지구 8단지	서울주택 도시공사	동우건설산업(주) 외 2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권원엔지니어링	개별난방
초행지봉-미아-3 (삼양동 791-1960)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백림종합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도원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항동하버라인 9·10·11단지	서울주택 도시공사	동부건설(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11단지 공사 자체감리)	지역난방
힐스테이트청계 (대농신안)	서울시	현대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대명기술단 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 자격

4-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u> 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u>서울특별시 외 지역</u> 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u>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u> 에 거주(단, 부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 모두 해당자치구 외에 거주해야함)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8. 6. 24.(당일포함) 이전인 자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8. 6. 25.(당일포함) 이후인 자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 항목은 우선공급 1순위로 신청한 분에게만 적용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추천
	2순위	순위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을, 취업준비생은 거주지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점을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수는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하며,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2021. 6. 24.)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계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하며, 졸업유예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시 일반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 계층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4-2 청년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④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1.06.25.~2002.6.24.)
- ①-④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u>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u> (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8. 6. 24.(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8. 6. 25.(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대학 및 고등학교의 범위는 대학생 계층과 동일)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이내인지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종사중인 업무에 종사한 기간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그 전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2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단지의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기준)이 적용됩니다.
- ※ ①-④ 2)의 ‘퇴직’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 ①-④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 과거 행복주택에 청년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청년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 계층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이므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를 ‘거주지’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신청 시 ‘소득없음’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4-3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 -⑦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 -④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 -④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⑦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①-④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4.6.25. 이후 출생)
-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해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활동소재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u> 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8. 6. 24.(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8. 6. 25.(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배점은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및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배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재혼을 하였을 경우 재혼 전의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발급 가능한 한 가지를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4-4 고령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6. 6. 24.(당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6. 6. 24. (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6. 6. 25. (당일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호대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중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4-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u> 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6. 6. 24. (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6. 6. 25. (당일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u> 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 · 보호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4-6 공통 신청자격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
 - 주택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소명방법: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민원회신문(공문)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소득유무 및 신혼부부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말하는 소득'의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구분	소득기준																	
	구분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table border="1"> <tr> <td rowspan="4">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td> <td>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td> <td rowspan="4">3,589,957</td> <td rowspan="4">5,018,789</td> <td rowspan="4">6,240,520</td> <td rowspan="4">7,094,205</td> <td rowspan="4">7,094,205</td> <td rowspan="4">7,393,647</td> </tr> <tr> <td>청년 계층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td> </tr> <tr> <td>고령자 계층</td> </tr> <tr> <td>신혼부부 계층 (예비, 한부모 포함)</td> </tr> </table>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청년 계층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	고령자 계층	신혼부부 계층 (예비, 한부모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청년 계층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																		
고령자 계층																		
신혼부부 계층 (예비, 한부모 포함)																		
<table border="1">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td> <td>신혼부부 계층 (예비 포함, 맞벌이인 경우)</td> <td>-</td> <td>5,931,296</td> <td>7,488,624</td> <td>8,513,046</td> <td>8,513,046</td> <td>8,872,376</td> </tr> </table>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신혼부부 계층 (예비 포함, 맞벌이인 경우)	-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신혼부부 계층 (예비 포함, 맞벌이인 경우)	-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461,251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1인가구는 기준금액에 20%p 가산, 2인은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만 해당됩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 **청년 계층**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만 산정)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인정

※ 입주자격 완화단지의 소득요건 및 기간요건

- 대상단지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은 공고문 9페이지 참조)
 - 수락리버타운, 천왕연지마을2, 신내3 도시형생활주택, 천왕지구 8단지
- 입주자격 : 공급대상별 기본 자격과 아래 기재된 완화된 소득 및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요건

공급계층	가구원수	소득기준	금액(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1인	140% 이하	4,188,283
	2인	130% 이하	5,931,296
	3인	120% 이하	7,488,624
	4인		8,513,046
	5인		8,513,046
	6인		8,872,376
	7인 이상		6인가구 금액에 1인당 461,252원 추가
신혼부부 중 맞벌이 세대	2인	140% 이하	6,387,549
	3인	130% 이하	8,112,676
	4인		9,222,467
	5인		9,222,467
	6인		9,611,741
	7인 이상		6인가구 금액에 1인당 499,689원 추가

• 기간요건

공급계층	기간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2,555일)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3,650일)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9세 이하 (2011.6.25.이후 출생)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채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7,2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29,200만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구분	자산 기준
총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며, 단,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총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기준

-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신혼부부 계층·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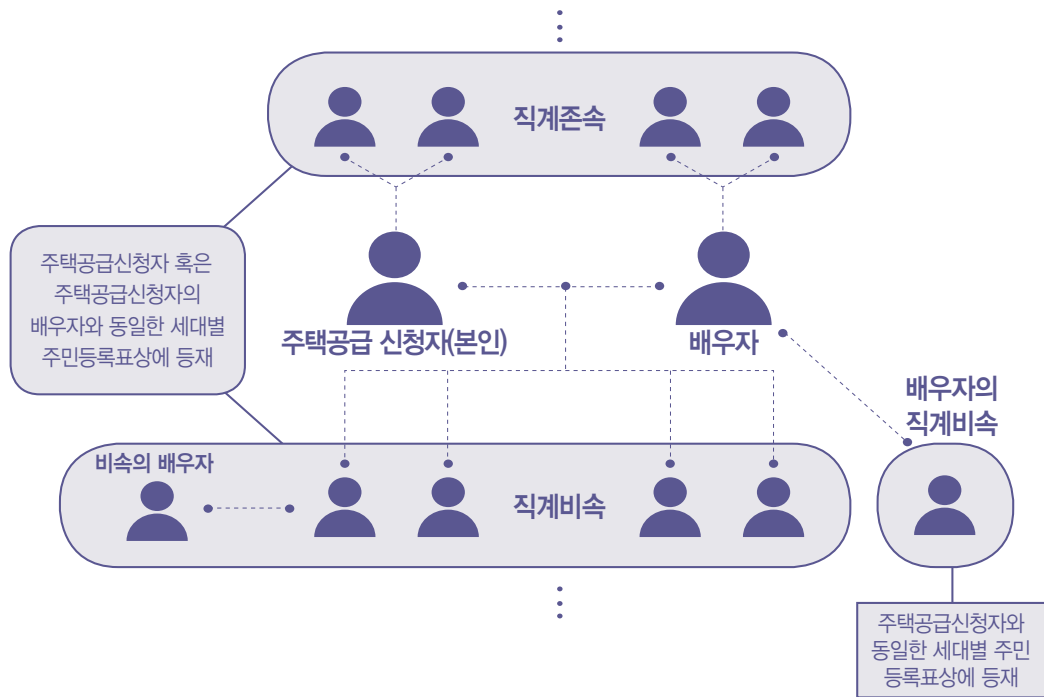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되며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다음 전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다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신청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



▶ 기타 사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공급 순위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사회초년생 일반자격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와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산정시점은 공고일 기준)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청약이 허용되는 사항이 있으니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고의 당첨자 또는 예비자가 되실 경우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예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며 예비자 공급 시 제외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 신청접수 안내

5-1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신청가능(마감시간 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자격요건(해당신청자격, 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우선공급순위, 가점사항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서울시(자치구) 최종전입일, 가점사항 등) 서류심사 시 해당가점이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해당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요망]

⇒ 청약 시 본인착오 또는 상담 시 착오안내 등으로 인해 본인의 기입한 내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형평성 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인터넷 신청

- 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 로그인(인증서 본인확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 3단계(신청자격 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인증서 인증확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신청시간

- 신청기간은 2021. 7. 7.(수) 10:00 ~ 7. 9.(금) 17:00이며 신청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개인용)공동인증서 발급 및 소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본인이 해당하는 우선·일반공급에 제대로 신청하셨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해당자가 착오로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 우편 청약

-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현장(대면)접수는 불가하므로**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우편청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청약 신청 대상자** : 인터넷 취약계층(고령자 · 장애인 등)
- **우편청약 신청기간** : 2021. 7. 7. (수) ~ 2021. 7. 12. (월) 17:00 도착분
- **우편청약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층별 청약신청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첨부한 청약신청서 (고령자용) 작성 후 접수처로 **등기우편** 발송
- **접수처**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행복주택담당자 앞
- ※ 등기우편접수에 따른 모든 신청서류는 **7월 12일(월) 17:00**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부 도착분까지만 인정합니다. 신청서류의 누락·오기재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청서를 접수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반드시 해당자격, 우선공급 신청 시 해당 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자치구최종전입일 및 서울시최종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 등을 사전 숙지 후 등기우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의 단순접수 등 신청대행만 진행하므로 신청서상 개인정보 오기재,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등기우편제출 전 최종검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취소 및 재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신청자격 및 순위의 해당 청약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시 청약 불가하며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구분	내용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1. 7. 27.(화) - 조회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서류심사대상자 조회하기, 공고 및 공지 게시판, ARS 서류심사 대상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신청순위 및 가점에 따라 3배수 내외(세부비용 하단참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방법 〉 1. 우선공급신청자 중 우선공급 당첨자 수의 3배수 내외 선정 2. 일반공급신청자 중 일반공급 당첨자 수의 3배수 내외 선정 (우선공급신청자 중 서류심사대상자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용 〉 - 기본기준: 공급세대수의 3배수 - 20㎡ 이하의 소형 면적 주택인 경우: 4배수 - 공급호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5배수 - 공급호수가 5호 이하인 경우: 6배수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1. 8. 5.(목) ~ 2021. 8. 9.(월)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별도안내 없이 탈락되므로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심사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보완서류 제출요청)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8월 9일 소인 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행복주택 담당자 앞
제출서류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 및 조회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7 ● 심사서류 제출안내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6. 24.)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본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23456-1***** (X)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의 서명란에는 개인 사인이 아닌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 정자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 해당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가 서류심사결과 우선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 결격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 **공동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발급 가능한 1가지 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예시: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1부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 심사서류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단,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에 산정되는 추가 세대구성원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만 추가 세대구성원도 서명(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는 미포함)]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자녀이름 정자로 기재) • 동의방법: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이 한글 정자 서명 또는 인감날인(단, 금융정보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 (주의) 동의서 미제출 시 임대주택 신청·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 	1부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확인서, 임신사실확인서 등 임신진단서 외 서류 인정불가) 	1부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p>※ 방문 서류제출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이 어려운 고령자 등 · 본인 방문 시: 신청자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제3자 방문 시: (인감증명방식)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인감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자필서명방식) -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개별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용도) • 대학생 우선공급 1순위 신청자의 경우(취업준비생 제외) - 부모 주민등록등·초본(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발급해 제출) 	주민센터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청 년 계 층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으로 신청한 자 : 아래 '해당자' 제출서류 확인 	국민연금공단 해당 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 아래 해당하는 자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업준비생: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실업인정일 기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해당학교 국민연금공단 해당 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고용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우선공급1·2순위, 일반공급 1·2·3순위에 해당하여 해당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 어려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으로 대체 • 위의 해당하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와 실제 업무 근거지가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업무 근거지가 표시된 재직(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증명서(군 경력 기재하여 발급) <p><입주 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해당센터에 청약통장(본인) 사본 제출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 (해당 세무서) 병무청 해당은행
신 혼 부 부 (한 부 모 가 족) 계 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신청자가 공고일 기준 미혼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 위임장(대표신청자에게 위임 - 위임자: 예비배우자, 수입자: 대표신청자)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와 위임장 상의 서명방식에 맞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날인 시: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본인발급본 인감증명서 - 자필서명 시: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 및 자필서명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해야 함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p><입주 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p>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일반공급 1:2:3순위에 해당하여 해당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 어려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고유번호증 등으로 대체 • 위의 해당하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위촉증명서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실제 업무 근거지가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업무 근거지가 표시된 재직(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p>〈입주 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해당센터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p>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p> <p>해당직장</p> <p>국세청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p> <p>해당은행</p>
<p>고령자 계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 신청자 중 가점대상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호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12.7.10이후 등록자) -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5 · 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하여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p>주민센터</p> <p>국가보훈처(지청)</p>
<p>주거급여 수급자 계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 신청자 중 가점대상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호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보호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12.7.10이후 등록자) - 5 · 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 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록일 기재) -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 (등록일 기재) ※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하여 제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p>주민센터</p> <p>국가보훈처(지청)</p> <p>주민센터</p>
<p>재청약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계층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 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p>병무청</p> <p>이전 임대사업자</p> <p>주민센터</p>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 이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 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입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어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분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상가 등을 소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주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일 경우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 상가 등의 임차인으로 전·월세를 내는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해당 없음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한부모가족</td> <td>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한부모가족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한부모가족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갱신계약 등	<p>■ 재계약 시 계층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후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절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대학생 계층뿐만 아니라 새로 변경한 계층인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계층으로 입주한 후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절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청년 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p>■ 재계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최대 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신청자의 거주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다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자산 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중 청년계층의 소득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추후 갱신계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갱신 계약 시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관련항목	유의사항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단,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고령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배정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1층~3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

○ 예비입주자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 수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 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부여된 순번의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2. 11. 16. 까지**입니다.)
- 예비자 공급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1. 11. 17.(수)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공사게시판, ARS 조회(1600-3456)
- 당첨자의 인적사항(개명) 및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10 계약 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전자계약 기간 : 2021. 12. 1.(수) 10:00 ~ 12. 8.(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전자계약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안내 예정)
- 휴대폰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할 경우, 신분증 촬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방문 전자계약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와 한국부동산원의 문자 수신 후 온라인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합니다.

○ 방문 계약 기간 : 2021. 12. 7.(화) ~ 12. 8.(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방문 계약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1층 공공주택부 (세부일정 및 장소는 개별안내 예정)

- ※ 방문 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계약하기 바랍니다.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② 계약자 도장 (본인 방문 시 서명가능) ③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④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 (공사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만일 계약금을 납부했다라도 계약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동차·자산(금융자산 포함)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1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만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근거하여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서 신청가능)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당첨자 또는 예비자가 되실 경우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예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당첨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 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청약 시 기재하지 못한 태아, 자녀 수는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제외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입주 및 입주 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 임차료 분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수급자도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납부해야하는 임차료에서 본인의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납부 금액이 없을 수 있음)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주거급여는 보장기관에서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2 단지 유의사항

■ 공통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현장확인 불가능(초행지붕-미아-3 제외)하므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공간)을 설치하여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호수에 따라 전자팸플릿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시 발생하는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야외 운동공간,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해당 단지만),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과 비교하여 일부 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다세대 매입형 단지 ■

- 단지별로 세대 내 옵션 설치 여부가 상이하며, 일부단지는 계약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폭, 높이, 용량,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단지는 계약자가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며, 희망하는 에어컨의 종류, 용량(규격) 등에 따라 별도의 배관 공사가 필요할 수 있고,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을 복구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단지는 기계실 주차타워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솔리스타(목동 793-6) ■

- 101동의 출입구는 1,2층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자와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계식 주차만 가능하며 일부차종은 주차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초행지붕-미아-3(삼양동 791-1960) ■

- 본 건물은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으로 총 세대수는 11세대입니다.
- 2동 지하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합니다.
- 1동과 2동 지상1층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위치합니다.
- 본 주택은 현장소장 동행하에 현장 방문이 가능합니다. (문의 : 02-6940-8614)

13 단지별 주소 ※ 신규 단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구분	단지명	주소(지번)
신규	디에이치포레센트(일원대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90-1
	르엘대치(대치제2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
	보라매자이(동작트인시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5-30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거여2-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04-123
	이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용두5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3
	태릉해링턴플레이스(태릉현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30
	YK서울대(봉천동912-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12-16
	더헤르미온(봉천동1666-5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66-51
	신길역봉주르오피스텔 (영등포동1가 3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1-3
	블리스다임빌(상봉동104-33)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4-33
	솔리스타(목동793-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93-6
	써밋카운티(답십리동243-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43-6
	아현시티(아현동327-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7-10
	엘리시아1차(화양동94-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94-13
위너스힐(화양동111-89)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1-89	

공급구분	단지명	주소(지번)
재공급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30
	강동리엔파크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6-3
	강동리엔파크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28
	강일리버파크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89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6
	거여 리본타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2-1
	고덕 그라시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2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0-1
	디에이치아너힐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8
	디에이치자이개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6
	래미안로이파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59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61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90-2
	래미안블레스티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0
	마포웨스트리버태영데시앙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449
	방배아트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3278
	서초선포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605
	송파파크데일3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605
	송파헬리오시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수락리버타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16
	숲에리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1-138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214-4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31
	신마곡벽산블루밍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37-5
	신정 파크샤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63-36
	신촌숲아이파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3-102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7
	정릉 하늘마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54
	천왕연지마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56-193
	천왕연지마을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3
	천왕지구 8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19-1
	초행지붕-미아-3(삼양동 791-196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960
향동 하버라인 9·10·11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향동 136-1	
힐스테이트 청계(대농신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18	

14 ● 우편접수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작성방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주거급여수급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에 **내용작성→서명→공사 제출**

- ① **행복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주거급여수급자 중 택1)
-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자필서명 필요, 총 4곳)

※ **고령자** : [예시]를 참고하여 공고문에 첨부된 아래 2가지 양식에 **내용작성→공고문 절취→공사 제출**

- ① <별표1> **행복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부** (고령자)
- ② <별표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자필서명 필요, 총 4곳)

■ **등기우편 접수기간** : 2021.07.07.(수) ~ 07.12.(월) 17:00 공공주택부 도착분까지만 인정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 외 일반우편/택배/착불배송 등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공공주택부 행복주택 담당자

- 우편접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인터넷 입력대행**하는 형태로,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신청서 내용누락 및 오기재 등의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인터넷 청약대행 시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하여 **결격 처리되므로**, 등기우편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단지 및 면적, 소득체크 등)
- **신청서는 반드시 각 계층별 신청서 중 우선/일반 공급 여부를 확인 후 1부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두 종류의 신청서 모두 제출 시 일반공급 주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약이 진행됩니다.
- 첨부된 신청서 예시자료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착오기재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이후 신청단지 및 신청유형에 대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오기재시 **납입인정회차가 0회처리** 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배송 중 분실, 도착지연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발송한 **등기우편의 등기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예시

행복주택 신청용

(**단지명**) 단지 행복주택 인터넷신청 요청서(고령자)

1. 신청면적 : 공급유형(**신청할 면적 기재**) m²

2. 신청자 인적사항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해당 시 체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없음		
본인	홍길동	4	8	7	6	5	4	-	1	2	3	4	5	6	7	외국인 배우자
배우자	성춘향	4	8	1	2	3	4	-	2	0	1	2	3	4	5	분리 배우자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등)

3. 신청순위 (택 1 체크)

우선공급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자치구 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일반공급		○

4. 우선공급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신청자만 기재)

① 거주 자치구 및 거주기간 ※ 1순위: 해당 자치구 최종 전입일 ※ 2순위: 서울시 최종 전입일	거주자치구 강남구	최종전입일 2001년 1월 1일
② 행복주택(고령자)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1~7급자 ○ 보호대상자 중 상이1~7급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1~14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배우자 포함)		

5.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기재**

6. 연락가능 전화번호 : (**010**) **1234** - **5678**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 신청인 : **홍길동** (인장 또는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별표1

행복주택 신청용

() 단지 행복주택 인터넷신청 요청서(고령자)

1. 신청면적 : 공급유형() m²

2. 신청자 인적사항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해당 시 체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없음	<input type="checkbox"/>
본인			외국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분리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등)

3. 신청순위 (택 1 체크)

우선공급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자치구 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일반공급		○

4. 우선공급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신청자만 기재)

① 거주 자치구 및 거주기간 ※ 1순위: 해당 자치구 최종 전입일 ※ 2순위: 서울시 최종 전입일	거주자치구	최종전입일 년 월 일
② 행복주택(고령자)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1~7급자 ○ 보호대상자 중 상이1~7급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1~14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배우자 포함)		

5.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6. 연락가능 전화번호 : (010) -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장 또는 서명)

별표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임대청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력하시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청약관련 사항
-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접속로그, 청약일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청약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청약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청약도 철회한 것으로 처리),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업 폐지 등의 사유발생시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나의 청약내역" 메뉴에서 회원 본인의 과거 청약내역 확인하는 서비스는 포함) 이 달성된 후 또는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후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합니다.
휴대전화번호, 주소	- 청약관련 전달사항 통보 및 보완자료 요청 경로 확보	
청약관련사항	- 배우자정보 및 청약관련저축 등의 가점항목으로 청약자격 확인에 이용	
IP주소, 접속로그, 청약일시	-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IP주소, 접속로그, 청약일시	- 청약신청 확인용도로 이용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란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청약 가능)

동의인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래의 경우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청약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확인 시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서울특별시	주택소유현황, 세대원 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공급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후,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주민센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세대주),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세대주), 전입일/변동일(세대주 및 세대원),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재외국민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동거인(세대원),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세대주), 전체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당첨 내역 및 납입회차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별표2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서명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청약 가능)

동의인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래의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를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 식별 및 인증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청약업무 수행 -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나의 청약내역" 메뉴에서 회원 본인의 과거 청약내역 확인하는 서비스는 포함)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청약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확인 시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서울특별시	주택소유현황, 세대원 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공급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후,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주민센터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세대주),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세대주), 전입일/변동일(세대주 및 세대원),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재외국민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동거인(세대원),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세대주), 전체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당첨 내역 및 납입회차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청약 가능)

동의인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예비입주자 중복선정불가 동의

동일한 유형(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 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서명란 4>

위 확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을 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